

2020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

I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1482호, 2020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0년 5월 4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II.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에 따라 2020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사업 매칭 및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회복 추진동력 마련을 위한 지원대책 추진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70억원 감액
- 추경으로 감액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반영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

〈표 2-1〉 수입 및 지출 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수입계획				지출계획			
구분	당 초	변 경	증·감	구분	당 초	변 경	증·감
계	48,481	41,258	△7,223	계	48,481	41,258	△7,223
공공예금 이자수입	801	801	-	비용자성 사업비	15,000	15,000	
예치금 회수	28,471	28,248	△223	예치금	33,381	26,158	△7,223
기타회계 전입금	15,000	8,000	△7,000	기본경비	100	100	
예탁금원금 회수수입	4,143	4,143	-				
예탁금 이자수입	66	66	-				

■ 수입계획 변경 : 72억 2,300만원 감액

- 기타회계 전입금 70억원 감액 : (당초) 150억원→(변경) 80억원

※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70억원 감액에 따라 기타회계 전입금 감액

- 예치금 회수 2억 2,300만원 감액 : (당초) 284억 7,100만원→(변경) 282억 4,800만원

※ 2019회계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 결과 반영

■ 지출계획 변경 : 72억 2,300만원 감액

- 예치금 72억 2,300만원 감액 : (당초) 333억 8,100만원→(변경) 261억 5,800만원

3. 검토의견

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코로나19 관련 「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」 중 일반회계에 편성된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을 기정예산보다 △70억원 감액편성하여 제출한 바, 동 기금도 이와 연동하여 수입 계획과 지출계획을 감액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임

- 일반회계중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을 당초보다 △70억원 감액조정하고, 동 기금의 수입계획중 기타회계전입금도 당초 계획보다 △70억원 감액하고, 지출계획중 예치금도 당초 계획보다 △70억원 감액하여 운용 계획하며
 - 조례에 따라 서울시 관련 위원회가 동 기금에 대한 결산 결과를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(△2억 2,300만원)와 지출계획중 예치금(△2억 2,300만원)에 기반영한 운용계획까지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포함시켜 제출한 것임

- 기금운용계획의 경우, 관련법령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,
 - 지출계획중 감액변경 요청된 예치금(△72억 2,300만원)은 해당 정책사업의 당초 계획보다 △21.7% 감소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임

 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코로나19 관련 「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」 과 연계된 것으로 재원의 한정성을 극복하기 위한 선택으로 사료되는 바, 동 기금의 지출계획 변경의 필요성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의 세출재원 확보 필요성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

○ 아울러 관련 법령은 “정책사업 지출금액”을 변경하려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

- 그러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수입계획인 “기타회계 전입금으로 변경하기 위해”로 기재하고 있으며 동 기금의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은 ①남북교류협력 추진, ②재무활동, ③행정운영경비 임에도 제출된 안전에 기재된 지출계획은 “비용자성사업, 예치금, 기본경비”로 임의 구분하고 있어 정책사업에 대한 임의적 구분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
- 특히, 코로나19 관련 「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」 등 제한된 의사일정을 고려한다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은 기금운용부서가 사전에 최소화시켜야 할 것으로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
□ 검토보고 작성

전 문 위 원 조 도 형

입 법 조 사 관 김 성 진